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안 번호	302
----------	-----

제출년월일 : 2024. 5. 31.

제출자 : 평창군수

I. 제안이유

2023회계연도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 주요내용

1. 결산개요 : 주민이 알기쉬운 결산정보 “별첨”

2. 세입·세출결산

가. 총괄

(단위 : 원, %)

구분	예산액 (가)	전년도이월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세입결산액 (라)	비율 (라/다)	세출결산액 (마)	비율 (마/다)	잉여금 (바=라-마)	비율 (바/다)
합계	720,565,609,000	191,832,190,868	912,397,799,868	953,587,483,545	104.5	707,924,213,733	77.6	245,663,269,812	26.9
일반회계	646,541,243,000	164,228,381,739	810,769,624,739	848,834,410,441	104.7	628,168,022,444	77.5	220,666,387,997	27.2
특별회계	74,024,366,000	27,603,809,129	101,628,175,129	104,753,073,104	103.1	79,756,191,289	78.5	24,996,881,815	24.6

나.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분	예산액 (가)	전년도이월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징수결정액 (라)	실제수납액 (마)	정리보류액 (바)	미수납액 (사=라-마-바)	비율(%)	
								마/다	마/라
합계	720,565,609,000	191,832,190,868	912,397,799,868	960,025,801,675	953,587,483,545	843,716,612	5,594,601,518	104.5	99.3
일반회계	646,541,243,000	164,228,381,739	810,769,624,739	854,476,328,523	848,834,410,441	843,716,612	4,798,201,470	104.7	99.3
특별회계	74,024,366,000	27,603,809,129	101,628,175,129	105,549,473,152	104,753,073,104	0	796,400,048	103.1	99.2

다.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가)	예산성립후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 (라)	다음연도이월액 (마)	보조금반납액 (바)	집행잔액 (사)=(다)-(라)-(마)-(바)
합 계	720,565,609,000	191,832,190,868	912,397,799,868	707,924,213,733	173,081,407,650	7,096,497,570	24,295,680,915
일반회계	646,541,243,000	164,228,381,739	810,769,624,739	628,168,022,444	151,907,260,010	7,015,234,454	23,679,107,831
특별회계	74,024,366,000	27,603,809,129	101,628,175,129	79,756,191,289	21,174,147,640	81,263,116	616,573,084

라.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결산상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245,663,269,812	173,081,407,650	64,005,943,730	21,510,250,070	87,565,213,850	6,469,198,310	66,112,663,852
일반회계	220,666,387,997	151,907,260,010	59,827,173,660	21,280,088,450	70,799,997,900	6,109,535,194	62,649,592,793
특별회계	24,996,881,815	21,174,147,640	4,178,770,070	230,161,620	16,765,215,950	359,663,116	3,463,071,059

마.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예산이용 : 없음
- 예산전용 : 4건 59,119,000원
- 예산이체 : 없음

바.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비비	1,100,000,000	97,600,000	97,599,950	0	50

3. 기금결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 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조 성 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25,867,883,775	791,768,645	5,077,816,435	4,286,047,790	26,659,652,420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630,415,006	△2,230,915,926	75,488,174	2,306,404,100	2,399,499,080
평창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00,301,360	175,969,823	175,969,823	0	11,176,271,183
평창군체육진흥기금	2,975,988,791	△314,378,365	1,047,597,635	1,361,976,000	2,661,610,426
평창군자활기금	253,413,575	246,218,160	250,218,160	4,000,000	499,631,735
평창군고향사랑기금	0	406,259,350	406,259,350	0	406,259,350
평창군재난관리기금	971,851,736	332,671,750	899,477,750	566,806,000	1,304,523,486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172,733,027	33,340,500	49,177,770	15,837,270	206,073,527
평창군식품진흥기금	129,159,820	△7,978,867	23,045,553	31,024,420	121,180,953
평창군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734,020,460	2,150,582,220	2,150,582,220	0	7,884,602,680

4. 재무제표

(단위 : 원)

구 분 회계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결과
일반회계	3,294,085,463,255	44,939,796,889	3,249,145,666,366	554,035,862,951	633,710,269,724	(79,674,406,773)
기타특별회계	228,853,677,940	1,146,698,733	227,706,979,207	43,655,415,760	48,219,957,363	(4,564,541,603)
기금회계	28,097,651,053	2,259,158,480	25,838,492,573	2,155,065,480	5,387,189,912	(3,232,124,432)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05,923,332,189	5,848,918	305,917,483,271	19,999,162,549	8,091,269,552	11,907,892,997
내부거래	(179,847,866,000)	(4,500,000,000)	(175,347,866,000)	(20,368,773,100)	(20,368,773,100)	0
합 계	3,677,112,258,437	43,851,503,020	3,633,260,755,417	599,476,733,640	675,039,913,451	(75,563,179,811)

5. 성과보고서

(단위 : 원, 개)

실국별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8	78	158	28	80	50	674,356,735,753
기획실	1	2	7	0	7	0	10,202,494,111
정책담당관	1	1	1	0	1	0	303,434,480
행정지원국	1	29	53	7	24	22	223,142,102,911
경제건설국	1	31	61	12	28	21	312,919,287,758
보건의료원	1	5	5	1	3	1	14,702,793,880
농업기술센터	1	7	21	6	10	5	90,791,348,194
의회사무과	1	1	2	1	1	0	1,218,576,076
상하수도사업소	1	2	8	1	6	1	15,957,915,830
읍면사무소	0	0	0	0	0	0	5,118,782,513

※ 결산액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